

의안번호	2207184
의 퇴 인	인요한의원
회 답 일	2025.1.21.
추계번호	24D634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2(채무의 조정 등) 신설	- 통일부장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¹⁾에 기금사용자의 기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조정하거나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제1항) -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 포함) 상환 또는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구상채권 포함)의 회수에 갈음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음 (제2항) - 통일부장관은 채권의 회수비용이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절차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을 상각할 수 있음 (제3항) - 제1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경우 기금은 기금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음 (제4항) -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가액산정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5항)	재량규정
2	안 부칙 제2조(채무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금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함	의무규정

1) 기금으로부터 용자를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거나 기금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개정안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의2(채무의 조정 등)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부칙 제2조(채무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2. 상세 사유

□ 남북협력기금사용자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및 상각 등(안 제8조의2 및 부칙 제2조)

-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통해 남북 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수행 자금 대출을 집행하고 있고, 1999년 10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 총 471곳을 대상으로 총 5,381억원의 대출을 집행하였으며, 기금 대출의 총 회수액은 2,662억원으로 대출금 잔액은 총 2,719억원임

[표 1] 남북협력기금 대출 현황(2024.12.)

(단위 : 억원)

	집행액	대출잔액
합 계	5,381	2,719
공공기관	1,343	960
민간기관	4,038	1,759

자료: 통일부

- 대출 공공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공사로 3곳으로 대출 잔액은 총 959억 5,300만원임

[표 2] 공공기관 대출 현황(2024.12.)

(단위 : 백만원)

	집행액	대출잔액
한국관광공사	90,000	85,500
한국광해광업공단	6,034	6,034
한국전력공사	38,300	4,419
합 계	134,334	95,953

자료: 통일부

- 대출 민간기업은 468곳으로 대출 잔액은 279개 기관 대상 총 1,759억이고, 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큰 3곳의 대출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 대출 잔액 규모가 큰 민간기업 3곳 대출 현황(2024.12.)

(단위 : 백만원)

	집행액	대출잔액
현대아산(주)	10,662	3,759
(주)아천글로벌코퍼레이션	3,390	3,390
(주)태림산업	4,200	3,390

자료: 통일부

- 개정안에 따라 기금사용자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상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채무의 면제 및 상각 여부는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므로 현시점에서 기금의 대출 회수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재정수입의 감소액을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